

수원지방법원 2022. 2. 8 선고 2021가단526049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주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충일

피 고 1. B

2. C

3. D

변 론 종 결 2022. 1. 11.

판 결 선 고 2022. 2. 8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주시 흥덕구 E 대 109㎡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1997. 2. 27. 접수 제1026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각 1/3 지분에 대하여 2007. 2. 20.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 소유인 청주시 흥덕구 E 대 109㎡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1997. 2. 27. 망 F(2011. 12. 6. 사망, 이하 ‘망인’이라 한다) 명의로 1997. 2. 20.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3,000,000원, 채무자 G, 근저당권자 망인으로 된 청주지방법원 등기와 1997. 2. 27. 접수 제10266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(이하 위 근저당권을 ‘이 사건 근저당권’이라 한다).
나. 망인은 2011. 12. 6. 사망하였고, 그 자녀인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.

【인정근거】○ 피고 B, C : 자백간주(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, 제1항)○ 피고 D :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의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 이전이나 그 무렵에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, G와 망인이 변제기를 달리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, 피담보채무는 변제기의 정함이 없어 채무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1997. 2. 20.로부터 10년이 경과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,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2017. 2. 20.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,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.

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그 상속지분비율(각 1/3)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

이에 대하여 피고 D는, 채무자인 G이 망인에게 이자를 변제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

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유선우